

	안산대학교 온라인출판물출판규정	규정번호	3-5-5
		제정일자	2003.03.01.
		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교육이념의 구현과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교재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온라인 교재란 인터넷상에서 운영되어지며 동영상(또는 음성)과 텍스트로 구성된 교재 및 부교재를 말한다.

제3조(사업) 온라인 교재 출판의 사업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부교재를 제작, 인터넷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공간과 시간상의 제한 없이 학문과 신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한다.

1. 교재 및 부교재
2. 일반 교양도서
3. 학술도서 등

제4조(심의위원회) 대학 온라인 교재 제작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출판물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략기획처장, 산학협력처장, 라키비움관장으로 하여 온라인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5조(온라인교재 출판 심의) ① 온라인 교재 및 부교재를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출판물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1. 온라인 교재 심의 의뢰서 1부.[별지제1호서식]
2. 온라인 교재 출력물 원고 2부.

②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.

③ 심의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(온라인 교재 분량) 온라인교재는 1학점을 기준으로 주당 20분 분량으로 제작 되어 15주 기준 총 300분 분량을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(제작 및 DB구축) 저자는 온라인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후, 계획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이트에 온라인교재를 탑재하여야 한다.

제8조(출판물표기) ① 온라인교재의 표기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발행인은 안산대학교 총장으로 하며, 발행처는 안산대학교 온라인교재출판부로 표기한다.

② 온라인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온라인교재는 안산대학교 또는 안산대학교 온라인교재출판부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.

제9조(저작권) 대학에서 발간되는 온라인교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진다.

제10조(출판물의 연구실적인정) 출판물이 교수의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
1. 출판물의 분량은 최소 1학점 기준으로 주당 20분, 15주, 총 300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.
2. 안산대학교 온라인교재출판부의 명칭으로 출판된 출판물에 한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온라인출판물 규정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출판된 온라인출판물에 대하여는 3년 전 출판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